

2026년 청정생산·생태산업개발 및 순환경제 산업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

청정생산, 생태산업개발, 순환경제 산업 등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(단체, 개인)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 「2026년 청정생산·생태산업개발 및 순환경제 산업 유공 포상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06월 22일
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

1. 목적

- 청정생산, 생태산업개발 및 순환경제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여, 산업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도모

2. 포상 분야 및 규모

- 포상 및 공적 분야 : 총 3개 분야, 6개 부문(개인, 단체(기업))
 - (청정생산 분야) 청정공정 및 친환경제품을 통해 온실가스 또는 폐기물 감축 등에 공이 큰 유공자(개인, 단체)
 - * 제조업이 제품생산 전(全)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(온실가스, 미세먼지, 폐기물, 유해화학물질 등) 발생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모든 활동
 - (생태산업개발 분야) 생태산업개발*을 통해 온실가스 또는 폐기물 감축 등에 공이 큰 유공자(개인, 단체)
 - *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열, 부산물 등을 다른 회사의 원료나 에너지로 순환 이용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향상하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산업 활동
 - (순환경제 산업 분야) 순환경제* 산업 발전을 위하여 사업화, 규제 개선, 정부 정책 수립 등에 공이 큰 유공자(개인, 단체)
 - * 제품의 전(全)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

□ 포상 규모 :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00점(개인, 단체 포함)

구분		2024	2025	2026
산업통상부 장관 표창	청정생산	3	3	0
	생태산업개발	3	3	0
	순환경제 산업	6	6	0
계		12	12	00

3. 포상 대상자 선발 절차

- 산업계,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신청과 추천을 받아 자체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포상 후보자 추천(7월)
- 산업통상부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자 선정(8월~9월)
- 포상 수상 대상자를 행정안전부로 추천(9월)



*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4. 포상 세부 신청 자격

① 청정생산 분야

- (개인) 청정공정 및 친환경제품 분야에서 단체(기업)가 아래의 성과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한 자 또는 청정생산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

* 단,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

- (단체) 청정공정 및 친환경제품 분야에 직접 투자 또는 해당 기술 개발을 통해 아래의 성과기준을 달성한 기업 또는 단체

* 단,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

<청정생산 분야 성과기준표>

유형	청정공정	친환경 제품												
세부 설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청정공정기술을 개발 또는 설비를 도입 * 청정생산 기술 또는 설비를 개발하여 산업계에 보급·확산시킨 경우도 포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‘생산-사용-폐기’ 수과정에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설계* 적용 및 유통정보를 관리하는 제품 * (예시) 소재 및 구조 단일화/단순화, 제품 내구성 향상, 제품 수리 및 교체 용이성, 재제조 및 유해물질 저감 등 												
성과 기준	<p>아래의 4개 조건 중 1개 이상의 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(기업) 또는 기여한 자</p> <p>1) 청정생산 분야 투자 금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 10년간의 청정생산 적용을 위한 총투자 금액이 3년(2022~2024년) 평균 매출액의 1% 이상 * 예시) 10년간 청정생산 전환을 위한 총 투자금액 5억원, 3년 평균 매출액 200억원/년일 경우 2.5%로 충족 <p>2) 온실가스 감축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정생산 적용을 통하여 10년간 온실가스 감축량 총합이 아래의 기준 충족하는 경우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단위 : 톤CO2-eq./년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head> <tr> <th>중소기업</th> <th>중견기업</th> <th>대기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00</td> <td>1,000</td> <td>5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3) 폐기물 및 폐수 저감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정생산 적용을 통하여 10년간 폐기물 및 폐수의 저감 총합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단위 : 톤/년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head> <tr> <th>중소기업</th> <th>중견기업</th> <th>대기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00</td> <td>1,500</td> <td>7,5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4) 기타 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정생산 적용을 통하여 미세먼지 또는 화학물질 등 유해 오염물질 저감 등 탁월한 성과 입증이 가능한 경우 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300	1,000	5,000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500	1,500	7,500	<p>아래의 4개 조건 중 1개 이상의 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(기업) 또는 기여한 자</p> <p>1) 친환경제품 생산 분야 투자 금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 10년간의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한 총투자 금액이 3년(2022~2024년) 평균 매출액의 0.5% 이상 * 예시) 10년간 친환경제품 생산을 위한 총 투자금액 10억원, 3년 평균 매출액 500억원/년일 경우 2.0%로 충족 <p>2) 친환경제품 매출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친환경 제품 생산을 통해 최근 2년 이상의 평균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.5% 이상 * 2개 이상의 친환경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모든 친환경제품의 매출액의 합으로 계산 <p>3) 친환경 제품화 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사 친환경 제품이 기존(유사) 제품보다 환경부하 요소를 10% 이상 개선(소재·구조 단일화/단순화 비율, 내구성, 재활용률 등)한 경우 <p>4) 기타 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친환경제품 상용화를 위하여 소재·부품 공급 업체들과의 협업 활동 등 수행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
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											
300	1,000	5,000												
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											
500	1,500	7,500												

② 생태산업개발 분야

- (자격 기준) 생태산업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또는 폐기물 감축 등 아래의 성과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한 자 또는 단체
(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)
- (선정 혜택) 향후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 시 우대지원 예정 (가점부여)

<생태산업개발 분야 성과 기준표>

구분	기업(단체)	개인
세부 설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산업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또는 폐기물 감축에 기여한 기업 또는 단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산업개발 분야의 사업화 추진 및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
성과 기준	<p>아래의 4개 조건 중 1개 이상의 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(단체)</p> <p>1) 생태산업개발 분야 투자 확대 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 10년 내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총 투자 규모가 7억원 이상인 경우 (중견기업 이상인 경우 15억원 이상) * (기준) 관련 설비 및 네트워크 구축,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자금 집행 입증 필요 <p>2) 온실가스 감축 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산업개발을 통하여 최근 10년 내 총 온실가스 감축량이 1,500tCO₂eq 이상 (중견기업 이상인 경우 9,000tCO₂eq 이상) * (기준) 배출권거래제(할당·상쇄배출권) 연계 감축량 또는 제3자 검증을 완료한 자발적 감축량을 공식 인정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<p>3) 폐기물 감축 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산업개발을 통하여 최근 10년 내 총 폐기물 저감량(재자원화량)이 9,000톤 이상(중견기업 이상인 경우 30,000톤 이상) * (기준) 소각 매립 등 폐기물 처리실적 및 재자원화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(올바로시스템 등 활용 입증) <p>4) 사회적 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산업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통하여 최근 10년 내 신규 고용한 인력이 총 2명 이상(중견기업 이상인 경우 5명 이상) * (기준) 사업 관련 인력 및 신규 고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(업무분장표,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입증) 	<p>아래의 4개 조건 중 1개 이상의 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자</p> <p>1) 생태산업개발 발굴 및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화에 기여한 자 * 해당분야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실적, 특히 또는 인증 실적 등 입증 <p>2) 생태산업개발 기술 개발 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요소 및 기술(설비) 개발에 기여한 자 * 기술 제안 및 실적 보고서 제출 실적 등 입증 <p>3) 규제·제도 개선 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산업개발을 저해하는 국내 규제 또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* 정책 제안 및 연구 보고서 제출 실적 등 입증 <p>4) 기타 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그 외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탁월한 성과 입증이 가능한 경우 또는 기업(단체) 성과기준 달성에 기여한 자 * 생태산업개발 관련 세미나, 포럼,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산업계 인식 개선 기여 입증

③ 순환경제 산업(재자원화, 재제조, 신사업)분야

- (개인)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, 관련 사업화 추진, 규제 개선, 정부 정책 수립 등에 공적이 있는 자
- (단체) 순환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또는 단체로서, 아래 표에서 정한 성과기준 이상을 달성한 자

※ (공통 사항) 단,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

<순환경제 산업 분야 성과 기준표>

유형	기업(단체)	개인
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자원화, 재제조, 신사업 등 순환경제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기업 또는 단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순환경제 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사업화, 규제 개선, 정부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한 자
성과 기준	<p>아래의 4개 조건 중 1개 이상의 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(기업)</p> <p>1) 순환경제 분야 투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u>최근 3년 평균</u> 순환 경제 사업 투자 규모가 <u>3억원 이상인 경우</u> <p>2) 사업화 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순환경제 사업을 통해 <u>최근 5년간</u> 사업화 성과가 총액 <u>15억원</u> 이상인 경우 <p>3) 기술 상용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순환경제 분야 기술 상용화 및 기술 개발 등 추진한 경우 <p>4) 기타 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순환경제 분야 발전에 탁월한 성과 입증이 가능한 경우 	<p>아래의 4개 조건 중 1개 이상의 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자</p> <p>1) 사업화 및 기술개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 3년 동안 순환경제 산업 확대를 위해 사업화 및 기술개발에 기여한 경우 <p>2) 규제·제도 개선 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순환경제 산업을 저해하는 국내 규제 또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한 경우 <p>3) 정책 수립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, 정부 정책 수립에 지원한 경우 <p>4) 기타 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순환경제 분야 발전에 탁월한 성과 입증이 가능한 경우

5. 신청 및 시상 일정

□ 신청 기간 : 2026. 06. 22(월) ~ 07. 24(금), 18:00까지

* 접수 기한 내 이메일로 제출한 건만 인정

□ 신청 방법 / 연락처 : 신청 서류 작성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

○ (청정생산 분야) yunsang@kncpc.re.kr / 02-2183-1567

○ (생태산업개발 분야) rachel3818@kncpc.re.kr / 02-2183-1561

○ (순환경제 분야) khl123@kncpc.re.kr / 02-2183-1524
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□ 시상 일정 : 관련 행사에서 시상(추후 재공지)

○ (일시) 2026년 10월 中

○ (장소) 미정

※ 수상자에게 수상 일정 별도 통보 예정

6. 제출 서류

○ 분야별 공적조서 및 해당 증빙 필수

*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

○ 유공포상 추천서(신청 당사자(기관)를 추천하는 제3자(기관) 작성요망)

○ 개인(기업)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첨부파일 참조)

구분	제출서류		작성양식	비고
우수 기업	1	포상 신청서(단체)	서식 1-1	-
	2	공적조서(단체)	서식 1-2	
	3	공적조서 증빙	-	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
	4	유공포상 추천서(단체)	서식 1-3	

구분	제출서류		작성양식	비고
	5	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	서식 1-4	
	6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	서식 1-5	
	7	포상 추천 제한 대상 사전확인서	서식 1-6	
	8	사업자등록증 사본	-	
	9	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본	-	
유공자	1	포상 신청서(개인)	서식 2-1	-
	2	공적조서(개인)	서식 2-2	
	3	공적조서 증빙	-	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
	4	유공포상 추천서(개인)	서식 2-3	
	5	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	서식 2-4	
	6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	서식 2-5	
	7	포상 추천 제한 대상 사전확인서	서식 2-6	
	8	사업자등록증 사본	-	
	9	재직증명서	-	

7. 기타

- 경력 및 공적사항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, 수상 이후라도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
- 작성 자료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E-mail로 제출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본 유공자 포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행정안전부 ‘정부포상 업무 지침(2026.1.1.시행)’을 기준으로 함

8. 포상추천 제한

- ※ 자격기준, 심사절차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포상 처리 지침에 따름

□ 국민표창(개인의 경우)

-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(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)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
 - 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등기임원
 - 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임원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-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그 임원
 - 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개인)
 - 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

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」제5조에 따른
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
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전국은행연합회)
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
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
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
경우 추천 가능

-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-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- *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(정부포상지침 중 2.일반국민 포상과 동일)

□ 단체표창(기업의 경우)

- 표창 추천일 기준,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
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
-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
이 공표된 사업장(민간단체에만 적용)
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
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
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민간단체에만 적용)

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
- 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 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-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
-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)
 - 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 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-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단체)
 - 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」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 - 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전국은행연합회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 - 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기타 사회적 물의